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할 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959호, '25. 5. 27. 공포, '25.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융자 및 이차보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은 제19조의12로 함(안 제19조의12)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9조의11)

1) 지원 사항을 ①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②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③ 보증 지원, ④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1은 제19조의12로 하고, 제19조의11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3. 보증 지원
- 4.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⑦ 생략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3. 보증 지원 4.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
<신설>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⑦ 생략